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제도(PL)

1. PL이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제조물책임”을 의미하며,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이다.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 7)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 1>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차이

구분	민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 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2. PL법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2)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

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3)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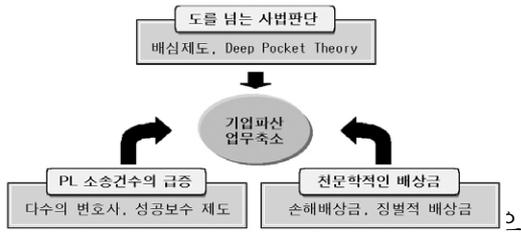
(4)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인정 :

-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⑥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있다.

3. PL법의 위협적 요인



로 정량적인 측면이 강해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내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내용중 “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35%정도가 **PL**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파업(25%) 때문이라는 답변보다 높았다.

4. “제조물 책임법(PL법)”의 기본 법리

제조물 책임법의 3가지 기본법리

과실책임(NEGIGENT)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 주의의무 : 예견되는 위험 · 오용시 위험 · 우연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의무

보증책임(BRACHOWARRANTY)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 ▲ 명시보증 : 글꼴에 의한 보증(계약서, 선전광고, 사용설명서) ▲ 묵시보증 :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품질에 대한 보증

엄격책임(SURCTABILITY) 제조자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어지지 않고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 ▲ 엄격 배상책임 발생 요건 : 피해발생/결함존재/해의 결함의 인과관계

법리의 발전단계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산업구조에서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관계만을 가지고 책임관계가 성립되었지만, 복잡한 산업구조와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에 이르러 판매, 유통단계까지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실에서 결함으로 입증대상이 변경되게 되었으며, 결함만으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5. 결함이란

“결함”이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의미하는데, “제품의 특성”, “예견되는 사용형태”, “인도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결정한다.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의 결함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6. “제조물 책임”의 3대 대책

안전대책
- 안전장치의 설치
- 경고/표시 등에 의한 안전성 높은 제품 만들기

클레임 대책
- 클레임 전문창고 설치
- 클레임 대응 매뉴얼 준비 및 **Smuktin**

소송대책
- 변호사와의 관계 정립
-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서/기록 관리

